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5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심미경, 구미경, 김규남,  
박강산, 윤기섭, 이민옥,  
이새날, 임종국, 정지웅,  
최호정, 허·훈, 황유정  
의원(12명)

찬 성 자: 김길영, 김용일, 김형재,  
박유진,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이성배, 이종배,  
장태용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상황이 지속되고, 코로나우울(Corona Blue) 등으로 인한 학생의 정신건강 악화가 심화되는 등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
- 더욱이 현재 정부가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체계나 사업 등이 학교폭력, 자살(시도)와 같은 사안별로 구성되어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최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개인이 정신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보다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교직원 및 보호자 대상 연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학생 정신건강교육의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 아. 학생 건강증진 관련 사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직무상 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학교보건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돕고자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학생에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서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

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건교육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관련 조례에 따른 교육

③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
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 및 교직원, 보호자 연수 방안
7.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
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생 정신건강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홍보 및 학생·교직원·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
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1300000038

##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심미경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3.

회신일 : 2022.10.16.

내용문의 : 02-2180-795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실태조사),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제8조(연수), 제9조(학생 정신건강교육), 제10조(학생 정신건강증진위원회) 및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비용발생

※ 단, 제6조(실태조사),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제8조(연수), 제9조(학생 정신건강교육)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인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문의결과, 관련사업 기추진 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관련조항	기추진 사업	예산액
제6조 (실태조사)	- 정서행동특성검사운영	23,708
제7조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학생 교실관리지원사업	21,750
	- 학생치료비	450,000
	- 정서행동특성검사협의체운영	11,440
	- 마음건강회복힐링프로그램 운영	50,604
제8조 (연수)	- 정신건강교육원격직무연수	18,200
	- 학생정신건강담당교사연수	13,400
제9조 (학생 정신건강교육)	-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운영	99,040
	- 생명존중교육및사안지원	62,600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14,400천원(연평균 2,8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14,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중 선출) 포함 최대 8명 의원으로 구성
- 같은 조례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직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는 1명으로 전제하고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와 위원장(부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전제
- 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회의시 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4,400천원(연평균 2,880천원)

- 총비용 = 학생건강증진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운영비 (안 제10조,제11조)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소계(b)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 총 비용(b-a)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 학생건강증진위원회 운영비 = 14,4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2,000천원+2,400천원

- 참석수당 = 12,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6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최대 구성인원 8명 중 위원장(부교육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한 6명만 계상

- 업무추진경비 = 2,4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8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붙임 : 기추진사업 주요내용

정서행동특성검사운영

○ 기간 : 2023. 3. ~ 12.

○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내용 : 2023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관심군 학생 관리 강화

○ 소요예산 : 23,708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학생교실관리지원사업

○ 기간 : 2023. 3. ~ 12.

○ 대상 : 교직원(담임교사 등)

○ 내용

- 문제행동에 관한 관리기법 등에 대한 컨설팅(사례회의) 실시

- ADHD 학생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학교 현장 지도(교실관리 기법 등)에 알맞은 연수 운영

○ 소요예산 : 21,75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학생치료비

○ 기간 : 2023. 3. ~ 12.

○ 대상 : 정신건강 위기 학생, 학부모

○ 내용

- 각 기관별 관내 자살(자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치료비 지원

-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사업' 학생 중 전문가가 추천하는 학생 치료비 지원

○ 소요예산 : 450,00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정서행동특성검사협의체운영

- 기간 : 2023. 3. ~ 12.
- 내용 :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연 2회 운영
- 소요예산 : 11,44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마음건강회복힐링프로그램운영

- 기간 : 2023. 3. ~ 11.
- 대상 : 초(5~6학년) · 중(1~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학급 단위로 신청
  - ※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생 또는 구성원의 긍정적 정서가 낮은 학급)
  -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
  - 1박2일 과정 12기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함양 및 자아존중감 향상
- 소요예산 : 50,604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정신건강교육원격직무연수

- 기간 : 2023. 6. ~ 7.
-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600명
- 내용 : 학생 정신건강의 이해 및 관리, 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자살예방 추진사례 등 정신건강교육 내실화 지원
- 소요예산 : 18,20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학생정신건강담당교사연수

- 기간 : 2023. 3.
- 대상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교사(보건, 상담)
- 내용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매뉴얼 및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배부
- 소요예산 : 13,40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운영

- 기간 : 2023. 3. ~ 12.
- 대상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 내용 :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정신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할 때까지 지속 관리
- 소요예산 : 99,04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

생명존중교육 및 사안지원

- 기간 : 2023. 3. ~ 12.
- 대상 : 자살(자해)시도학생
- 내용 : 위기·자살징후 학생 대상 상담·치유 및 치료 지원
- 소요예산 : 62,600천원

(2023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서)